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인정관

제정 2004. 3. 19.
 개정 2006. 3. 16
 개정 2007. 4. 1
 개정 2008. 3. 1
 개정 2009. 5. 19
 개정 2012. 7. 1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단의 사무소는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청강가창로 389-94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대학교” 이라 한다)내에 둔다.

제4조(업무) 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에 따라 별도 부서에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재정의 관리 및 사용
4. 지적재산권 등의 취득과 사용
5. 대학교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6.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7. 법령과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8. 기타 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직

제5조(임원) ① 단에는 이사 1인과 감사 1인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은 재임 중 이사가 된다.

③ 감사는 교직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④ 감사는 단 운영의 투명성과 사업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감독하는 기능을 가지며, 이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단장) ① 단에는 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 ② 단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단장은 대외적으로 단을 대표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한다.
- ④ 단장은 총장이 소속 전임 교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계약에 의하여 외부인사를 초빙 할 수 있다.
- ⑤ 단장은 필요시에 대학 교수 및 전문성을 지닌 지자체와 지역단체의 인사 그리고 학교기업에 참여한 기업인들을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⑥ 단장은 법령과 학칙의 범위 안에서 소관 사무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을 정할 수 있다.
- ⑦ 단장은 대학교와 기업간의 산학체결을 위한 협조관계에 중간적 조정자이며, 합리적인 산학협력을 위하여 창의적인 사업의 기획 및 관련 산학정보가 상호간 유지되도록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직무대행) 단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후임 단장 선임시까지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행정조직) ① 단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조직으로 구성한다.

- ② 단은 단장, 부단장, 산학협력팀, 학교기업, 경기게임상용화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청강모바일아카데미, 애플작터, 연구소로 구성한다.
- ③ 단의 구성원은 단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산학협력단의 행정사무를 수행한다.
- ④ 행정조직에 필요한 인원은 단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며, 대학교의 교직원을 겸직발령으로 임명할 수 있다.
- ⑤ 단장은 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항은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및 관련 사업비 규정을 준하여 적용한다.
- ⑥ 단장은 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팀을 둘 수 있다. 이때 팀장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분야별 전문 지식과 경륜을 고려하여 단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선임한다.
- ⑦ 단은 각 행정조직의 특성에 따라 스쿨에 조직운명을 위임할 수 있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9조(구성) ①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산학협력단장, 처(실)장, 단의 감사이며, 임명직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 운영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단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단의 정관 및 단의 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단의 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제10조의 각호1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때
2. 재적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제 4 장 재 산 및 회 계

제13조(기본재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일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기본재산에 편입할 수 있다.

1. 출연재산
2. 증여재산
3. 출연금, 보조금 및 기부금
4. 회계잉여금 중 적립금

제14조(운영재원 및 수입) 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의 수입으로 한다.

1. 산학협력계약 및 사업에 의한 수입금
2. 산학협력성과에 의한 수입금
3.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및 기타 수입금
4. 이자수입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제15조(지출) ① 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단의 관리운영비
2. 대학교의 시설 및 운영지원
3.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4. 단의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5.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6. 특허정보 조사, 지적재산권의 취득, 출원, 등록 및 유지 등을 위한 경비
7. 필요시 수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학교의 회계에 전출
8. 기타 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지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 17조의 규정에 따라 행한다.

제16조(재산관리의 제한) 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총장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양도, 증여, 임대, 교환, 포기
2. 예산외 채무의 부담
3. 채권의 포기
4. 기타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17조(회계 관리) 단의 회계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회계연도) 단의 회계연도는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5 장 보칙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단장 및 단의 교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단의 회계를 감사한자, 단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시는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다.

제20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해산) ① 단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해산한다.

② 해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해산한다.

③ 해산 시 잔여재산은 대학교에 귀속된다.

제22조(공고) ①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
2. 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
3. 단의 주된 사업 및 수익사업을 행함에 있어 단장이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고의 방법은 단장이 정한다.

제2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기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4조(보충적 규정) ① 산학협력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학협력계약으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이 법에 의한 산학협력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이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이행을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 등기소에 등기 완료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체결된 산학협력계약상의 권리·의무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
- ③ (특허권 등의 이전) 총장은 이 정관의 효력 발생시에 대학이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가운데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